

# 서울시립대학교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

제정 2005. 1. 3 규정 제 682호  
개정 2005.10.18 규정 제 744호  
개정 2008. 9. 1 규정 제 972호  
개정 2010. 9.14 규정 제1116호  
전부개정 2015. 3. 4 규정 제1507호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시립대학교 교직원 등의 발명을 효율적으로 보호·장려하고 사업화함으로써 대내적으로 기술개발촉진 및 연구재원확보에 이바지하며 대외적으로 발명자와 학교의 권리보호 및 민간에의 기술이전을 통한 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식재산”이라 함은 특허법 등 관련 법률에 의한 발명,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반도체직접회로의 배치설계, 저작물 등 유·무형 일체의 재산을 말한다.
2. “직무발명”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 가. 서울시립대학교의 교직원이 서울시립대학교의 시설 및 인력을 활용하여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창출한 지식재산
  - 나. 서울시립대학교 연구원, 학생, 수료생 등이 연구비를 지원받아 창출한 지식재산
  - 다. 법률이나 그 밖에 제3자와의 연구 계약에 의하여 그 권리가 서울시립대학교로 귀속된 지식재산과 제3자와의 연구 과제라도 서울시립대학교 시설이나 인력을 활용하여 창출한 지식재산
3. “자유발명”이라 함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직무발명을 제외한 발명으로서 그 권리가 발명자에게 귀속되는 지식재산을 말한다.
4. “교직원”이라 함은 서울시립대학교에 근무하는 전임교수, 겸임교수, 연구교수 등의 모든 교수, 조교, 직원 등을 말하며, “연구원”이라 함은 서울시립대학교의 연구 업무 등에 종사하는 연구생, 학생, 수료생 등을 말한다.
5. “발명자”라 함은 지식재산을 창출한 교직원과 연구원 등을 말하며, “대표발명자”라 함은 발명신고서에서 지분율이 가장 높은 발명자를 말한다.
6. “기술료” 또는 “실시료”라 함은 기술의 매매 및 라이선스 등에 의한 기술이전 대가를 말한다.
7. “기여자”라 함은 해당 계약이 체결되는 데 있어 상당한 역할을 한 자 또는 기관을 말하며, 대학 및 산학협력단 교직원 또는 그 외의 제3자를 포함한다. 기여의 내용은 계약 대상 기술의 가치를 높이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한 경우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을 「특허법」 상의 발명, 「실용신안법」 상의 고안, 「디자인보호법」 상의 디자인, 「상표법상」의 상표, 「반도체직접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상의 반도체직접회로의 배치설계, 「저작권법」 상의 저작물 등에 대하여 적용하는 경우에는 “특허권”은 각각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배치설계권”, “저작권” 등으로, “발명”은 각각 “고안”, “디자인”, “상표”, “배치설계”, “저작물”로, 그리고 “발명자”는 “고안자”, “창작자”, “저작자” 등으로 본다.

## 제2장 재산 및 회계

**제4조(지식재산권의 귀속)** ① 발명자의 직무발명에 대한 제반 권리는 서울시립대학교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이 이를 승계한다.

② 산학협력단장은 제3자와 연구 계약 체결 시 서울시립대학교 학술연구비 관리 지침의 별지서식 제1호의 연구계약서에 따라 지식재산권의 귀속에 관하여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직무발명의 신고)** ① 발명자는 제2조제2호의 직무발명을 한 경우에는 그 발명의 내용을 지체 없이 산학협력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발명자는 발명신고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발명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
2. 권리승계합의서(별지 제2호 서식)
3. 선행기술조사서
4. 발명의 내용 설명서(주요 내용, 도면, 요약서 등)

**제6조(자유발명의 신고)** ① 발명자는 자신의 자유발명에 대한 권리를 산학협력단에 양도할 수 있다.

② 발명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권리를 양도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7조(권리승계결정의 통지)** ① 제5조제1항 또는 제6조제2항에 의한 발명의 신고를 받은 산학협력단은 신고된 날로부터 4월 이내 당해 발명에 대하여 그 특허출원 지원여부, 권리의 귀속주체, 권리의 승계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산학협력단이 제5조제1항의 신고에 대하여 본조 제1항의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당해 발명은 발명자의 자유발명으로 된다.

③ 산학협력단은 제1항의 결정을 서면으로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지식재산의 권리화)** ① 산학협력단은 발명자로부터 승계 받은 지식재산을 권리화 할 것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산학협력단 명의로 출원 또는 등록한다.

② 지식재산 출원에 필요한 비용은 산학협력단에서 부담하며, 연구 계약 체결로 지식재산을 공동 출원할 경우 관련된 비용을 발명자 또는 공동 출원인이 전부 또는 일부 부담할 수 있다.

③ 산학협력단은 제6조에 따라 신고 된 자유발명을 승계하는 것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당해 지식재산의 권리화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지급한다.

④ 발명자가 대한민국 외 다른 국가로 지식재산의 출원 및 등록을 원할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발명자가 비용의 일부를 부담한다.

⑤ 산학협력단은 지식재산을 출원한 후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한다.

## 제3장 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

**제9조(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 서울시립대학교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교직원 등의 발명이 직무발명인지의 여부
2. 승계한 직무발명 등의 국내 및 해외 출원 여부
3. 지식재산권의 이전 거래 및 활용
4. 지식재산권의 계속 보유 여부
5. 지식재산권 관련 규정의 개폐
6. 기타 지식재산권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12조(의결정족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필요한 경우 전문가 또는 발명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3조(간 사)** ① 위원회에는 위원장이 임명하는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심의 안건을 정리하고, 필요한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비치한다.

## 제4장 보상 및 기술료의 분배

**제14조(발명자에 대한 보상)** ① 발명자가 보유한 지식재산권을 산학협력단이 이전받은 경우에는 발명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금을 지급한다.

1. 국내특허의 경우 1백만원
2. 해외특허의 경우 2백만원
3.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출원의 경우 1백만원

② 발명자가 제5조의 직무발명의 신고 없이 보유한 특허를 산학협력단이 이전받은 경우에는 보상을 하지 않는다. 단, 자유발명을 산학협력단이 이전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제15조(기술이전 실시료 분배)** ① 산학협력단은 직무발명 등의 실시허락 또는 기타의 기술이전의 대가로 받게 된 실시료에서 출원, 등록 및 기술이전 등에 소요된 모든 비용을 공제한 후 남은 수익금을 발명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한다. 대표발명자는 발명 신고 시 제출한 발명신고서의 지분율을 참조하여 지분비율을 기재한 기술료배분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를 제출한다.

② 공제 후 남은 수익금은 발명자에게 다음과 같이 분배한다.

1. 수익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분의 90을 발명자에게 지급한다.
2. 수익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8백만원과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70을 발명자에게 지급한다.
3. 수익이 1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7천4백만원과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65를 발명자에게 지급한다.

③ 제6조에 따라 신고된 발명을 산학협력단이 승계하는 것으로 결정한 기술, 발명자가 보유한 지식재산권을 이전받은 기술, 산학협력단이 보유를 포기한 기술, 특허권이 없는 기술 등에 따른 실시료의 분배도 제1항 및 제2항을 따른다.

④ 국가연구과제의 지원을 받은 발명 등에 대한 기술이전 및 연구 성과 활용 등의 실시료 분배는 지원기관과 체결한 계약 시 실시료 분배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기관의 규정을 우선적으로 따르며, 그 밖의 사항은 제1항 및 제2항을 따른다.

**제16조(외국에서의 실시허락에 대한 특례)** 제15조에도 불구하고 외국에서의 실시허락으로 받게 된 실시료는 발명자와 산학협력단에 7 : 3 비율로 분배한다.

**제17조(자문료의 분배)** ① 교직원이 산학협력단을 통하여 기술, 법률, 경영 등의 자문을 위하여 계약하는 경우에 산학협력단은 동 교직원에게 그 자문에 따른 수입액의 100분의 90을 지급한다.  
② 자문결과에 따라 기술료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5조에 따라 이를 분배한다.

**제18조(지급기간)** ① 기술료 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발명자가 퇴직한 후에도 존속한다.  
② 발명자가 재직 중 또는 퇴직 후 사망하는 경우 제1항의 권리는 상속인이 이를 승계한다.  
③ 퇴직한 발명자 또는 발명자의 상속인은 주소 및 연락처를 퇴직 또는 사망 등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6월 이내에 산학협력단에 통지하고, 주소 및 연락처의 변경 시에도 지체 없이 그 변경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기술이전 기여자에 대한 보상)** ① 기술이전 기여자에게 다음과 같이 보상할 수 있다.  
1. 기여자에 대한 보상은 대학귀속분 기술이전료 수입의 10% 이내로 한다.  
2. 발명자와 협의된 경우에는 기여자에 대한 보상을 발명자 귀속분의 10%이내에서 추가로 할 수 있다.  
3. 기여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보상의 총액 범위 내에서 기여자별로 분배하여 지급한다.  
② 기술이전 기여자는 기술이전기여보상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를 산학협력단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여자에 대한 보상은 산학협력단장이 해당 기술의 대표발명자를 포함한 5인 이내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보상여부, 기여도, 보상수준 등을 평가하여 결정한다.

## 제5장 보 칙

**제20조(발명자의 의무)** ① 발명자는 그가 한 발명 등에 관한 지식재산의 출원, 등록, 지식재산권의 처분 또는 실시허락에 있어서 서울시립대학교 및 산학협력단의 업무수행에 협력하여야 한다.  
② 발명자는 그 발명의 내용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21조(해석 및 시행)** 이 규정에서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 등의 관련 법규에 따르고,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 부 칙(2015. 3. 4)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 규정의 제정 이전에 이미 실시된 실시료의 배분 비율은 계약 당시의 규정에 따라 적용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제정 2015. 3. 4)

발명 신고서										
발명의명칭	국문: 영문:						심사청구	<input type="checkbox"/> 유 <input type="checkbox"/> 무		
발명자	성명			지분(%)	소속			연락처		
	서울 시립대	한글:								
		영문:								
		한글:								
	타기관	영문:								
		한글:								
영문:										
공동출원	출원인				지분율(%)	비용부담(%)				
	<input type="checkbox"/> 단독									
	<input type="checkbox"/> 공동									
출원희망국	<input type="checkbox"/> 대한민국 <input type="checkbox"/> PCT <input type="checkbox"/> 미국 <input type="checkbox"/> 일본 <input type="checkbox"/> 유럽 <input type="checkbox"/> 중국 <input type="checkbox"/> 기타( )									
관련 연구과제	과제구분	<input type="checkbox"/> 해당 없음 <input type="checkbox"/> 국가 R&D <input type="checkbox"/> 민간 용역 <input type="checkbox"/> 지자체 <input type="checkbox"/> 교내연구비 <input type="checkbox"/> 기타( )								
	과제종류	<input type="checkbox"/> 단독 <input type="checkbox"/> 주관 <input type="checkbox"/> 협동 <input type="checkbox"/> 공동 <input type="checkbox"/> 위탁 <input type="checkbox"/> 기타( )								
	연구책임자					wise과제번호				
	주관기관명					부처명				
	당해과제기간					연구관리기관				
	사업명									
연구과제명										
실시계약	<input type="checkbox"/> 유 <input type="checkbox"/> 무	기술이전 대상기업명				기업 기술이전 담당자	성명: 연락처:			
발명의 공개여부	<input type="checkbox"/> 미공개 <input type="checkbox"/> 공개	공개사유: <input type="checkbox"/> 학회 발표 <input type="checkbox"/> 학술지 게재 <input type="checkbox"/> 연구보고서 <input type="checkbox"/> 기타( ) 공개일자:       년 월 일       (※공개 내용 제출)								
지정 특허사무소	업체명				담당 변리사		연락처			
							전화: 이메일:			
위의 발명을 서울시립대학교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에 따라 신고합니다.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span>년    월    일</span> <span>신고자</span> <span>(인)</span> </div>										
<b>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b>										

[별지 제2호 서식] (제정 2015. 3. 4)

<b>권리승계합의서</b>			
발명의 명칭	국문: 영문:		
양도인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기타:		
양수인	성명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장	
	주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163(전농동 90)	
<p>양도인은 위 발명에 대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등을 서울시립대학교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에 따라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양도하고 동 규정에 따른 실시료 지급에 동의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b>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b></p>			

## 기술이전 계약서

(기술명: )

OO대학 OO학과 교수OOO(이하, “연구책임자”라 한다)가 개발하여 서울시립대학교 산학 협력단 (이하, “甲”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는 “ ”에 관하여 주식회사 OOOO (이하, “乙”이라 한다)에게 기술을 제공하고 OO실시권을 허여하고자 한다. 이에 “甲”과 “乙”은 다음과 같이 협의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 제1장 총 칙

#### 제1조(용어의 정의)

본 계약의 적용을 위한 용어는 다른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의미로 사용된다.

1. “특허기술”이라 함은 어떤 기술에 관한 특허출원이 특허청에 유효하게 특허 등록된 기술을 말한다.
2. “실시”라 함은 대한민국 특허법 제2조 제3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특허품”이란 특허기술을 적용하여 제조한 제품 또는 물품을 말한다.
4. “실시기간”이란 본 계약에 의해 본 기술의 실시가 허여된 기간을 의미한다.
5. “실시지역”이란 본 계약에 의해 본 기술의 실시가 허여된 지역을 의미한다.
6. “실시내용”이란 본 계약에 의해 본 기술의 실시가 허여된 범위를 의미한다.
7. “기술전수지도”라 함은 본 기술의 원만한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자문, 연수 등을 포함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
8. “기술의 개량”이라 함은 본 기술을 활용하여 상당한 경제적 또는 기술적 진보를 가져오는 기술을 의미한다.
9. “판매수입액”이란 본 계약의 목적이 되는 기술을 적용하여 생산한 제품 또는 물품의 국내외 총 판매액을 말한다.

#### 제2조(기술의 정의)

본 계약에서 “기술”이라 함은 “甲”이 출원 또는 등록하거나 “甲”이 실시권을 허락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의 보호대상으로 된 기술 또는 Know-How로 하기에 명시한 것을 말하며, 본 기술 이외의 파생기술이나 개량기술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또한, 본 계약의 기술은 향후 지식재산권의 등록, 유지 또는 무효 여부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 (1) 대상기술 : 기술의 명칭…… (특허출원번호 또는 등록번호로 특정)
- (2) 관련 Know-How (있는 경우):

#### 제3조(기술이전의 목적)

본 기술이전의 목적은 “乙”로 하여금 본 기술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함이다. (또는 본 기술의 이전목적은 별첨 기술이전계획서와 같다)

#### 제4조(신의성실 및 상호협조)

- ① “甲”과 “乙”은 신의를 가지고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② “甲”은 계약이행 과정을 통하여 “乙”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제공기술에 관하여 협조하여야 하며, “乙” 또한 필요한 사항을 “甲”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③ “甲”과 “乙”은 “甲”으로부터 본 기술의 실시권을 허여 받지 아니한 제3자의 실시에 대한 증거 확보에 노력하여야 하고, 확보된 증거에 대하여는 상호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비밀보장 및 기술보호)

- ① “甲”과 “乙”은 상대방의 상호 동의 없이 본 계약과 관련하여 지득한 연구 활동상 또는 경영상의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甲”의 일반적인 연구 활동과 “乙”의 일반적인 기업 활동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② “乙”은 기술에 대해 “甲”의 사전 승인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대내외 유출 및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단, “乙”은 본 기술의 실시를 위하여 임/직원, 대리인, 피고용인, 재실시권자에게 특허기술 및 관련 Know-How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乙”은 본 기술의 비밀보장을 위한 필요한 합리적인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③ 본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에도 비밀유지 의무는 유효하다.

제6조(주요사항의 변경)

“乙”은 본 계약 체결 이후 법인의 주소, 대표 등 주요사항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甲”에 통보하여야 하며, 그 불이행으로 인한 “甲”의 착오는 “乙”의 항변으로부터 면책된다.

제7조(통지)

양 당사자간의 통지는 등기우편에 의해 상대방 주소 중 가장 최근의 주소로 하며, 어느 당사자가 그들의 주소나 연락장소를 변경했을 때에는 상대방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2장 실시권의 허여

제8조(실시권의 허여)

- ① “甲”은 “乙”에게 본 계약의 조건에 따라 본 기술을 대한민국에서 실시할 수 있는 (통상 또는 전용) 실시권을 허여한다. 단, 국외실시의 경우에는 하기 제10조에 따른다.
- ② “甲”이 “乙”에게 제공하는 기술에 관한 기술자료 및 기술정보는 “甲”이 개발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별첨 기술이전 내용 및 범위와 같다. 또한, “甲”은 본 기술자료 및 기술정보를 기술문서나 기술에 대한 설명으로서 “乙”에게 제공한다.
- ③ “甲”은 “乙”이 본 기술 중 실시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실시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제9조(계약기간)

- ①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0000년 0월 0일까지 (또는 0년간)으로 하며, 계약종료일까지 본 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 획득 및 유지비용은 “乙”의 부담으로 한다.
- ② 제1항의 기간은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단, “乙”이 계약만료 6개월 이전에 계약기간 연장의를 “甲”에게 표시하여 계약만료 전까지 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乙”은 본 기술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 제10조(국외실시)

“국외실시”는 대한민국 이외의 지역에 실시권을 허여하거나 본 기술을 수출하는 것 (동 지역에 본 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행위를 포함)을 말하며, “乙”이 본 기술의 국외 실시를 원하는 경우에는 “甲”과 별도로 국외실시에 관한 실시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제11조(기술의 실시 등)

- ① “甲”은 본 기술을 현재 있는 상태로 “乙”에게 제공하며, 본 기술을 이용한 제품의 시장 적합성과 경제성 및 판로시장 개척 또는 영업에 대하여 “甲”은 책임지지 아니한다.
- ② “甲”은 “乙”이 기술의 실시 등에 있어서 기술적인 지원을 요청할 경우 이에 성실히 지원하여야 한다.

### 제3장 기술료 등

#### 제12조(기술료 등)

- ① 기술료는 착수기본료 및 매출정률 사용료로 구성된다.
- ② “乙”은 착수기본료로 금0000원정을 “甲”에게 지급한다.
- ③ “乙”은 본 기술을 이용한 제품의 매출정률 사용료로 국내외 판매수입액의 0%를 “甲”에게 지급한다.
- ④ 제3항의 매출정률 사용료의 최저 실시료는 금0000원정으로 하며, 매출정률 사용료가 최저 실시료 이하인 경우에는 최저 실시료를 매출정률 사용료로 간주한다.
- ⑤ “甲”이 “乙”에게 본 기술에 대하여 기술자문 또는 기술지원을 하는 경우 “乙”은 “甲”에게 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기술료 이외에 기술자문료 또는 기술지원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자문료 또는 기술지원료는 실비를 원칙으로 한다.

#### 제13조(기술료 등의 지급방법)

- ① “乙”은 제12조 제2항의 착수기본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甲”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단, 제2차, 제3차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하기 기한 내 지급한다는 약속을 위해 “乙”은 지급 보증보험증권을 본 계약 체결 시 “甲”에 제출하여야 하며, “甲”에 기 납부한 기술료에 대하여는 “甲”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제1차분: 금0000원정 (본 계약 체결시)
  2. 제2차분: 금0000원정 (본 계약 체결 후 60일 이내, 또는 0000년 00월 00까지)
  3. 제3차분: 금0000원정 (시제품 생산 후 10일 이내, 또는 0000년 00월 00까지)이와 관련하여 “乙”은 본 계약 후 000일 이내에 시제품을 생산하여야 하며, 이 기간의 변경은 “乙”의 서면 요청으로 쌍방 간의 협의로 변경할 수 있다.
- ② “乙”은 제12조 제3항의 매출정률 사용료를 판매개시일로부터 계약기간 동안 매년 0월말까지 “甲”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乙”은 본 기술을 이용한 제품의 상품 생산 개시일을 “甲”에게 서면통지 하여야 한다.
- ③ “乙”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지급기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키지 않을 경우에 “甲”은 연체이자를 지급토록 할 수 있으며, 이때의 연체이자율은 지급 당시에 “甲”이 거래하는 주거래 은행의 연체이자율 (또는 예를 들면, 15% 복리로 이자)을 적용할 수 있다.
- ④ 매출정률 사용료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2항의 기간 동안 “乙”이 “甲”에 매출정률 사

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음이 향후 발견되었을 경우 “甲”은 “乙”에게 당해 연도 매출정률 사용료의 2배를 납부케 할 수 있다.

⑤ 이 계약에 의해 “甲”에게 지급할 금액에 대하여 국내법에 의하여 원천 과세될 세금은 세금고시서상의 부과 의무자로 규정된 당사자가 각자 부담한다.

⑥ 제3항 또는 제4항의 경우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제14조(판매수입액의 계산 기준)

① 제12조 제3항의 판매 수입액은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된 기업회계 원칙 및 재무제표 규칙에 의하여 작성된 손익계산서 매출액으로 한다. 또한, 손익계산서의 매출액으로 본 계약에 의하여 생산되는 제품의 판매수입을 확정하지 못할 경우에는 매출액 명세서를 기준으로 하고, 매출액 명세서로서도 판매수입을 확정하지 못할 경우에는 “甲”의 조사에 의하여 결정한다.

② “乙”은 본 계약에 의하여 생산·판매하는 제품을 타 주요부품 또는 타 단위제품과 결합하여 판매할 경우, 본 계약에 의하여 생산·판매하는 제품이 단독으로 판매될 때의 시장가격을 매출액으로 한다. 다만, 현재의 국내 시장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당해년도 중의 평균 국제 시장가격으로 한다.

#### 제15조(판매수입의 회계자료)

① “乙”은 계약기간 동안 매년 0월 0일까지 제14조의 기준에 의한 기술을 이용한 제품의 연간 판매 수입액을 증빙하는 판매제품의 유형 및 제조원가, 매출액이 기재된 회계자료를 “甲”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乙”은 “甲”에게 지급될 실시료의 총액에 관한 회계자료 및 기록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乙”은 “甲”이 제1항의 판매수입액과 관련한 회계자료 등의 증빙자료를 요구하였을 경우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甲”이 판매수입의 확인을 위하여 장부의 검사를 요청할 경우 근무시간 중에 이를 허락하여야 한다.

#### 제16조(판매수입액계산의 조사)

① “甲”은 “乙”이 제15조에 의해 제출한 판매수입액 증빙서류가 제14조에 의한 기준으로 작성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제3자인 공인회계사를 위촉하여 본 계약에 의하여 생산되는 제품의 판매수입을 조사하고, 판매수입을 결정하여 제14조에 갈음할 수 있다.

② 위촉된 공인회계사는 판매수익의 결정을 위하여 통상근무시간 중에 “乙”의 필요한 장부를 열람할 수 있으며, “乙”은 공인회계사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甲”은 제1항에 의거 위촉된 공인회계사의 조사결과 제15조에 의해 제출된 판매수입 회계자료 등 증빙서류가 허위이거나 “乙”의 고의 및 과실로 인하여 사실과 다를 경우 “甲”은 공인회계사 위촉에 따른 비용을 “乙”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④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甲”이 조사하여 결정할 경우에도 전 각항을 적용할 수 있다.

### 제4장 기술전수 지도

#### 제17조(기술전수 기간)

본 계약의 기술전수 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0개월로 한다. 다만, “甲”은 “乙”의 기술전수 수용능력을 고려하여 기술전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추가 기술전수 비용은 “乙”

이 부담하여야 한다.

#### 제18조(기술전수의 범위)

본 기술전수 지도의 범위는 별첨 기술이전 내용 및 범위와 같다.

#### 제19조(기술전수 비용)

“乙”은 “甲”이 별도로 정하는 기술전수 지도비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소요비용을 “甲”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제20조(기술전수 비용의 지급 방법)

- ① “乙”은 본 계약 체결시 (또는 체결 후 00일 이내)에 기술전수 비용으로 금000000원정을 “甲”에게 지급한다.
- ② 기술전수 기간 중 “乙”의 귀책사유로 기술전수를 중단하거나 기술이전계약을 해지할 경우 기술전수 비용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 제21조(피기술전수요원 및 장비교체)

- ① 기술지도에 필요한 제반 소요자재, 장비는 “乙”이 일괄 제공한다. 단, 필요시 “甲”의 연구시설을 이용하여 시험 등을 할 수 있다.
- ② “甲”은 “乙”에게 기술전수 지도기간 중 필요에 따라 피기술전수요원 및 장비 등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乙”은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00일(통상 30일) 이내에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전항의 기술지도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상호협의를 의해 정할 수 있다.

### 제5장 기술의 개량

#### 제22조(기술의 개량 등)

- ① “甲”이 본 기술에 대하여 지식재산권을 취득한 경우 본 계약에 의거하여 “乙”은 본 기술에 관한 지식재산권의 실시권을 갖는 것으로 한다. 다만, 지식재산권의 출원, 보정, 등록, 유지, 실시권 설정등록, 명의이전 등 지식재산권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 (계약 체결 전에 기 투입된 비용 포함)은 “乙”이 별도로 부담한다.
- ② “乙”이 “甲”으로부터 제공받은 본 기술을 개량, 대체, 확장 또는 추가한 발명 (이하, “개량기술”이라 한다)을 타 기술에 적용하거나 이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획득하기 위한 출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甲”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③ 제2항의 “乙”의 개량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甲”과 “乙”의 공동명의로 출원하고 공동 명의로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개량기술에 관한 지식재산권 획득을 위한 출원, 등록 및 유지를 위한 서류 제출, 수속 등에 있어서 상호 협조 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쌍방이 공동 부담한다.
- ④ “甲”과 “乙”이 제2항의 개량기술 여부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 “乙”은 개량기술이 아님을 입증하여야 한다.

#### 제23조(기술의 보완)

- ① “甲”은 본 기술과 관련하여 본 기술이전 내용 및 범위 이외의 기술 및 기술전수 지도기간

이후의 기술보완에 관하여 乙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기술을 보완해 줄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술의 보완을 위해서 “甲”과 “乙”은 “甲”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보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제6장 실시권의 설정 등록 등

### 제24조(실시권의 설정 등록)

① “甲”은 제1차분의 착수기본료의 수령 후 “乙”의 실시권 설정등록에 지체 없이 협조하여야 한다. 다만, 소요되는 비용은 “乙”이 부담한다.

② 실시기간 중 일방의 본 기술의 양도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양자는 상호 협의할 수 있으며, 본 요청은 계약 후 60일 이후에 한하여 유효하다.

### 제25조(실시권 이전)

① “乙”은 실시사업과 같이 이전하는 경우 또는 상속 기타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甲”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실시권을 이전할 수 없다.

② “乙”은 “甲”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 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하거나 제3자에게 실시권을 재 허여하기 위해 제3자에게 본 기술의 실시권을 제공할 수 없다.

### 제26조(명칭의 사용)

“乙”은 “甲”의 사전 동의 없이는 광고, 판매촉진, 기타 선전의 목적 및 쟁송상의 자료로 본 계약과 관련하여 지득한 정보 및 “甲”이 “乙”에게 제공한 보고서나 문서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그 원본이나 복제복사물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또한 상기의 목적으로 “甲”의 명칭을 암시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27조(특허표시)

“乙”은 본 기술에 관한 특허품 또는 특허품의 용기나 포장에 특허표시를 할 수 있다.

### 제28조(품질관리)

① “乙”은 특허품의 품질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乙”은 근무시간 중 “甲”이 고장 및 공정, 특허품을 검사할 것을 허용하여야 하며, 부품 또는 특허품을 제조하는 하도급자가 있을 때에는 그들의 공장도 검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7장 계약의 종료 등

### 제29조(계약의 종료)

① “甲” 또는 “乙”은 다음 각 호의 경우 30일 간 (또는 60일간)의 기한을 두고 상대방에게 시정을 요구한 후 상대방이 불이행하거나 또는 시정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1. “乙”이 제12조의 비용지급을 “甲”과 사전 협의 없이 지연하는 경우.
2. “甲” 또는 “乙”이 본 계약서상의 중대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3. 기술이전 계약체결 후 2년 이내에 상품판매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4. “乙”이 제13조의 제품 생산개시일을 통보하지 않거나, 생산개시일 전이라도 본 기술의 상업화를 포기하거나 명백히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5. “乙”이 조업을 중단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조업이 재개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6. “乙”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하여 기술이전이 불가능할 경우.
- ② “甲”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1. “乙”이 파산선고를 받는 경우.
  2. “甲”이 제15조에 의거 증빙자료 등을 요청한 후 “乙”이 2개월 이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3. “甲”이 제16조에 의거 조사통보를 한 후 “乙”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4. “乙”이 영업을 양도하거나 인수·합병될 경우 또는 회사청산, 회사정리 절차에 들어가는 경우.
-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제12조의 매출정률 사용료는 해지시까지의 실적에 의하되 해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甲”에 지급하여야 한다.
-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거 계약이 해지된 경우 “甲”은 제3자를 실시권자로 재선정할 수 있으며 재선정된 자와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⑤ “甲”은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乙”에게 본 계약과 관련하여 해지시까지 취득한 제반자료를 필요에 따라 “甲”에 반환케 할 수 있다.
- ⑥ 본 계약이 해지된 후에도 “甲”과 “乙”은 제5조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 제30조(계약 종료의 효과)

- ① 본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는 “乙”은 어떠한 이유로든 본 기술 및 관련 상표, 상호를 실시, 사용할 수 없다.
- ② 계약이 종료하더라도 기납부한 실시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 제31조(일부무효의 효과)

- ① 본 계약의 어느 조건 또는 어느 조항이 어떠한 이유로든지 간에 무효, 부적법, 집행 불능일 경우에는 그 무효, 부적법, 집행 불능은 본 계약의 다른 조건 또는 조항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② 제1항의 조건 또는 조항이 무효, 부적법, 집행 불능으로 인정되는 한도 안에서 그 조건 또는 조항이 이 계약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한다.

#### 제32조(계약의 변경)

“甲”과 “乙”은 서면 합의에 의하여 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乙”의 생산능력이 제품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거나 “乙”이 본 기술을 기술적으로 충분히 실현하지 못하거나 “乙”이 이를 개선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乙”의 사전 동의하에 “甲”은 본 기술의 실시를 제3자에게도 허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통상실시권 허여의 경우에 단서 적용>

### 제8장 분쟁 해결

#### 제33조(분쟁해결)

본 계약의 이행 또는 쌍방의 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이나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쌍방은 이를 원만히 상호협의로 해결하고자 노력하여야 하며, 이러한 분쟁이나 이견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 쌍방은 사단법인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결정에 의하여 해결한다.

제34조(침해소송)

- ① 본 계약의 기술과 관련하여 “甲”과 “乙”의 일방이 제3자에게 소송이나 청구를 제기한 경우, 이 사실을 타방에게 알리고 모든 자료를 송부하여야 하며 소요비용은 “甲”이 부담한다. 단, “乙”이 제3자의 권리침해를 인지하고 “甲”에게 소송을 제기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甲”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러한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
- ② 본 계약의 기술과 관련하여 제3자가 어느 일방을 당사자로 소송이나 청구를 제기한 경우, 일방은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방어하여야 하며, 상대방에게 이 사실을 즉시 알리고 소송이나 청구관련 모든 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35조(손해배상)

“甲”과 “乙”이 고의 또는 과실로 본 계약을 위반하여 “甲”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36조(불가쟁)

“乙”은 본 계약에 관련된 기술의 특허의 유효성을 다투지 아니한다.

제37조(준거법)

본 계약 및 본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당사자간의 권리, 의무관계는 대한민국 법률에 의하여 해석된다.

제38조(불가항력)

본 계약의 이행에 있어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인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또는 손실에 대해서는 서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 일방은 상대방에게 가능한 한 자세하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불가항력적인 요인이 제거된 후에는 지속적으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39조(면책)

“甲”과 “乙”에 의한 본 계약기술의 실시가 제3자의 특허권 기타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하지 않는다. 또한 계약기술의 실시에 의해 “乙”에게 발생한 제3자에 대한 기술료의 지불을 포함하여 “乙”의 어떠한 손실에 대해서도 “甲”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40조(계약의 효력)

- ① 본 계약은 쌍방이 기명날인한 날로부터 유효하다.
- ② 본 계약은 “甲”과 “乙”간의 기술실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이전에 “甲”과 “乙”간의 모든 문서에 우선한다. 또한, 본 계약과 관련 있는 다른 협의나 계약은 이 계약서에 언급되고 서면으로 작성되어 권한 있는 당사자의 서명이 없는 한 그 효력이 없다.

제41조(해석)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및 본 계약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쌍방의 합의 (또는 “甲”의 결정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에 의하여 결정한다.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고, “甲“ 과 “乙“이 각각 1통씩을 보관한다.

별 첨 : 1. 기술이전 세부추진 계획서 1부.

20 년 월 일

“갑”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단장 (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163(전농동 90)

“을”

“책임연구원”

성 명 : (인)

주 소 :

# 기술자문계약서

(자문명: )

(주)△△△△△(이하 “갑“이라 한다)와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자문책임자 : ○○○학과 ○○○교수)(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기술자문계약을 체결한다.

##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갑“이 “을“에게 “○○○○○에 관한 기술자문”(이하“기술자문“이라 한다)을 의뢰하고 “을“이 이를 수행함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자문내용)

- 기술자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 
  -
- 기타 구체적인 기술자문의 내용은 “갑“과 “을“의 합의에 따른다.

## 제3조(계약기간)

본 계약의 기간은 200 년 월 일부터 200 년 월 일까지로 하며, “갑“은 이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갑“, “을“ 쌍방의 합의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4조(기술자문 조건)

- 기술자문은 매(주/달) ○ 요일 총○○ 회, 매회 ○ 시간 “갑“이 지정한 장소에서 수행하는 것으로 한다.
- “갑“은 계약기간 중 “을“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 “을“를 방문하여 필요한 기술자문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갑“이 연구수행 중 “을“에게 기술자문을 구하는 경우 “을“은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 기술자문의 수행과 관련하여 자문책임자의 국내 및 해외 출장이 필요한 경우 자문책임자의 본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한 “을“과 자문책임자는 “갑“의 제반 내부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 “을“은 기술자문을 수행하기 위하여 “갑“의 사업장을 출입하는 경우 “갑“의 제반 내부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 제5조(기술자문비)

- “갑“은 “을“에게 기술자문비로 총액 만원정(W )을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 1차 : 계약체결 및 청구서 접수 후 15일 이내 일금 만원정(W )
  - 2차 : 계약기간 개월 경과 후 청구서 접수 후 15일 이내 일금 만원정(W )
  - 3차 : 계약기간 만료 및 청구서 접수 후 15일 이내 일금 만원정(W )

## 제6조(결과의 귀속)

- 본 계약을 통해 얻은 기술, 정보, Know-How 및 이를 직·간접적으로 응용하여 취득한 지식재산권을 포함한 기술자문 결과에 대한 모든 권리는 “갑“의 소유로 하며,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시 “을“의 발명자/창작자를 공동 발명자/창작자로 포함시킨다.

2. “을“은 제1항의 지식재산권을 출원/등록함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 제출 등의 제반 절차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 제7조(비밀보장)

1. “을“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갑“이 제공한 일체의 자료, Idea 등 기술자문 수행 중 취득한 “갑“의 영업 비밀 또는 기술정보를 본 계약의 목적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고, “갑“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본 항의 의무는 본 계약의 기간 만료 또는 해지 후에도 계속하여 유효하다.
2. “을“은 “갑“의 기술자문의 제반 결과물에 관한 정보를 계약기간 및 본 계약 종료 후 ( )년 간 “갑“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 할 수 없다. 단, Know-How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3. “을“이 기술자문의 학술적인 성과를 학회지, 논문 등으로 발표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갑“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하되, “갑“은 법률적, 사업적, 지식재산권적 문제 등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하며, “을“은 “갑“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갑“을 공동 발표자로 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의 정보, 자료 결과물이 공지의 사실이 된 경우 및 “을“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함 없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이미 알고 있거나 알게 된 경우에는 본 조의 적용이 없는 것으로 한다.
5. “을“이 본 조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을“은 이로 인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 제8조(명칭사용)

“갑“과 “을“은 광고, 판매촉진, 기타 선전의 목적 또는 기술자문의 수행 사실 인용목적으로 상대방의 상호 또는 상표 등 명칭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대방의 사실 서면동의를 얻어야 한다.

#### 제9조(계약의 해지)

1. “갑“은 다음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을“에 대한 서면 통지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가. “을“이 본 계약을 위반하고 그 시정을 요하는 “갑“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주 내에 이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
  - 나. 자문책임자의 사망·사고·소속변경, 기타 사유로 인하여 기술자문의 완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갑“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본 계약을 해지하여야 하는 경우 “갑“은 3주간의 기간을 정하여 “을“에게 이를 통보하여 상호 협의한 후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갑“이 본 계약을 위반하여 원활한 기술자문의 수행이 극히 곤란하다고 판단 될 경우 “을“은 3주간의 기간을 정하여 “갑“에게 그 시점을 최고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내에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본 계약이 만료되거나 해지되는 경우에 “을“은 해지일로부터 2주 이내에 계약과 관련하여 “갑“이 제공한 일체의 자료, Idea 및 기술자문 수행 중에 취득한 정보 및 제반 기술적 성과를 “갑“에게 반환/제출하는 동시에 해지 시까지의 기술자문비 집행 정산서 및 보고서를 “갑“에게 제출하고 해지 시까지의 기술자문비를 정산하되, 해지 시까지 발생한 결과물의 귀속은 제6조에 따른다.
5. 기타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은 “갑“과 “을“의 합의에 의한다.

#### 제10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변경은 “갑“과 “을“의 서면 합의에 의한다.





